KOSHA GUIDE

X - 14 - 2014

『4M 리스크 평가 기법』에 관한 기술지침

2014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KOSHA CODE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제정자 : 이 성 주 ○ 개정자 : 최 창 률

ㅇ 개정자 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총괄실

○ 제·개정경과

- 2008년 4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8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10년 11월 위험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12년 4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등 반영)
- 2014년 11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- 독일의 위험성 평가 제도(사업장 안전보건조치법: ArbSchG), 2004
 - 영국의 위험성 평가 제도(Risk assessment), 2004
 - KOSHA GUIDE X-28-20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를 위한 지침
 - KOSHA GUIDE G-84-2012 기계·기구 제조업 등의 위험성 평가 지침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)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(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 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4년 11월 24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『4M 리스크 평가 기법』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『산업안전보건법』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8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)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(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)규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4M 리스크 평가(이하 "리스크 평가"라고함) 기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 범위

이 지침은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4M 리스크 평가"라 함은 공정(작업)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Man (인적), Machine(기계적), Media(물질·환경적), Management(관리적) 등 4가지 분 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.
 - (나) "리스크 평가(Risk assessment)" 라 함은 잠재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와 피해크기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한다.
 - (다) "사고(Accident)"라 함은 유해위험요인(Hazard)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망을 포함한 상해, 질병 및 기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상(Event)과 현상을 말하다.

X - 14 - 2014

- (라) "사건(Incident)"이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원하지 않는 사상(Event)으로서 인적·물적 손실인 상해·질병 및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적·물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앗차사고를 포함하여 말하다.
- (마) "유해위험요인(Hazard)"이라 함은 인적·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요인(요소) 또는 이들 요인이 혼재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실제 사고(손실)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극으로는 기계적 고장, 시스템의 상태, 작업자의 실수 등 물리·화학적, 생물학적, 심리적, 행동적 원인이 있음을 말한다.
- (바) "유해위험요인 확인(Hazard identification)"이라 함은 시스템에서 인적·물적손 실 및 환경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가진 물리·화학적 여러 요 인을 확인(도출, 파악)하는 것을 말한다.
- (사) "리스크(Risk)"라 함은 특정한 유해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빈도(가능성)와 사고의 강도(심각성)의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.
- (아) "브레인 스토밍(Brain storming)"이라 함은 일정한 주제에 관하여 회의 형식을 채택하고,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여 새로운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일반사항

- 4.1 리스크 평가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.
 - (1) 공정을 신설하는 경우
 - (2) 새로운 설비 도입 및 공정·작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
 - (3) 자율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
 - (4) 기존 사용하고 있는 물질 이외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

KOSHA GUIDE

X - 14 - 20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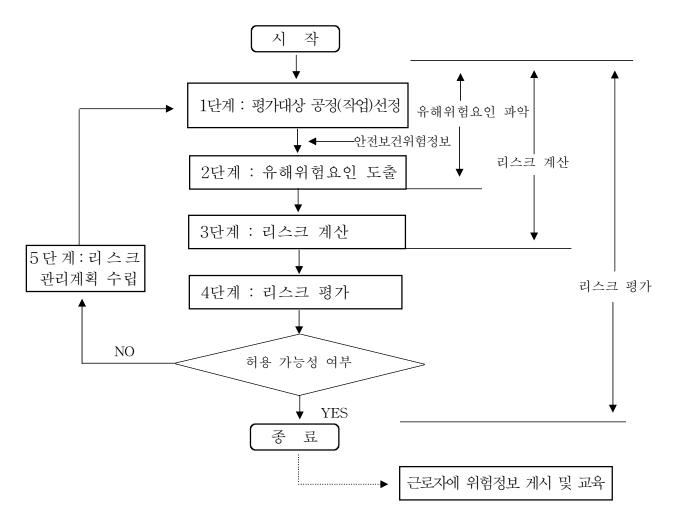
- (5) 기존공정 · 작업에 대한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
- (6) 중대사고, 재해 또는 앗차사고(Near miss)가 발생한 경우
- 4.2 리스크 평가팀 운영
 - (1) 리스크 평가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- (가) 팀장(평가대상 공정 또는 작업의 책임자)
 - (나) 대상공정을 구성하는 작업책임자(반장 또는 특별한 경우 작업자)
 - (다) 정비작업자
 - (라) 안전·보건관리자
 - (2) 팀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평가대상 공정에 대한 작업지식과 경험 보유
 - (나) 리스크 평가 기법 숙지
 - (다) 대상공정의 안전보건정보(앗차사고 사례 포함) 수집
 - (라) 팀구성원간 안전보건정보 교환을 통한 완전한 이해
 - (3) 리스크 평가 진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.
 - (가) 리스크 평가의 수행은 팀장이 중심이 되어 수행
 - (나) 팀장은 팀구성원이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4M의 항목별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 도록 유도(별표 1 참조)
 - (다)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발생빈도(발생 가능성) 및 피해강도(피해 심각성) 를 결정하여 리스크 계산
 - (라)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가 허용가능 위험인지,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

- (마) 허용할 수 없는 유해위험요인의 경우, 리스크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리스크 관리계획은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
- (바) 리스크관리계획 실행 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는 가능한 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내 이어야 함

5. 리스크 평가 추진절차 및 단계별 수행 방법

5.1 리스크 평가 추진절차

리스크 평가 추진절차는 <그림 1>과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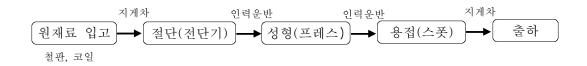
<그림 1> 리스크 평가 추진절차

5.2 리스크 평가 시 단계별 수행방법

5.2.1: 1단계

평가대상 공정(작업)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.

(1) 평가대상을 <그림2>와 같이 공정별로 분류



<그림2> 자동차부품 업종의 브라켓트 제조공정 흐름도(예시)

- (2) 분류된 공정이 1개 이상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고 단위작업이 세부 단위작업으로 구분될 경우 단위작업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정함.
- (3)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보건상의 위험 정보를 작성하여 평가대상 및 범위 확정(별지 1 참조)
- (가) 제조공정(작업)별로 작성
- (나) 원(재)료, 생산품, 근로자수 파악 기재
- (다) 제조공정을 세부 작업순서대로 기재
- (라) 기계·기구는 운반기계, 전동구동기계 등 공정 내 모든 기계·기구 파악 기재
- (마) 유해화학물질은 주원료뿐만 아니라 첨가제 등 공정 내에서 소량 사용하는 물질도 파악 기재
- (바) 그 밖의 안전보건상 정보에는 과거의 발생재해(공상포함), 앗차사고 및 근로자 (장애자, 여성, 고령자, 외국인, 비정규직, 미숙련자 등)특성 기재
- (4) 리스크 평가 대상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정보 사전파악
 - (가) 과거 3년간 사고 현황(앗차사고 사례 포함)
 - (나) 교대작업 유무

KOSHA GUIDE

X - 14 - 2014

- (다)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작업경력
- (라) 근로자 특성(장애자, 여성, 고령자, 외국인, 비정규직, 미숙련자 등)
- (마)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
- (바) 안전작업 허가증 필요 작업유무
- (사) 작업할 기계·설비
- (아) 사용하는 전기공구류
- (자) 취급물질에 대한 취급량, 취급시간, 무게 및 운반높이
- (차) 운반수단(운반차량, 인력)
- (카) 사용 유틸리티(전기, 압축공기 및 물)
- (타) 사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확인
- (파) 근로자의 노출물질(분진, 가스, 증기)
- (하) 작업환경측정결과(최근 2년간)

5.2.2 : 2단계

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유해위험요인별 피해대상과 재해형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.

- (1) 유해위험요인 대상
 - (가) 사용기계 · 기구에 대한 위험원의 확인
 - (나)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원 확인
 - (다) 예상되는 잘못 사용 및 고장
 - (라) 노출 등 작업환경
 - (마)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
 - (바)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공정
 - (사) 작업간 물류이동(운반)의 위험원 확인
 - (아) 보수 및 수리 등 비정상 작업에 대한 위험원 확인
- (2) 유해위험요인 도출방법
 - (가) 위험을 Man(인적), Machine(기계적), Media(물질·환경적), Management

KOSHA GUIDE

X - 14 - 2014

(관리적)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평가

- (나) "기계적" 항목은 모든 생산설비의 불안전 상태를 유발시키는 설계·제작·안전 장치 등을 포함한 기계자체 및 기계주변의 위험 평가
- (다) "물질 및 환경적" 항목은 소음, 분진,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 평가
- (라) "인적" 항목은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적 위험 평가
- (마) "관리적" 항목은 안전의식 미흡으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 사항 평가

(3) 피해대상 파악

유해위험요인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대상자를 파악하되, 다음의 산재취약 대상자는 반드시 파악하여 기록한다.

- (가) 신규채용자, 작업전환자 및 연소자
- (나) 장애인 및 임산부
- (다) 이주노동자
- (라) 작업장에 비정상적으로 출입하는 자(비정규직, 계약업체 종사자, 방문객, 청소 원 등)

(4) 재해형태 파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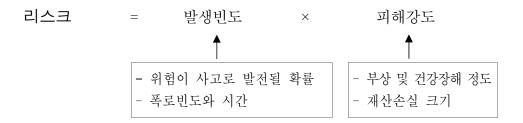
유해위험요인별 발생가능한 재해형태를 파악한다.

- (5) 리스크 평가표 작성(별지 2 참조)
- (가) 평가대상 공정명 및 공정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기재
- (나) 유해위험요인을 4M으로 구분하여 도출
- (다) 평가대상 작업발생주기 및 작업시간
- (라) 유해위험요인, 피해대상, 재해형태
- (마) 기존 리스크관리활동
- (바) 추가 리스크관리계획
- (사) 현재 리스크, 리스크관리 후 리스크 기재

5.2.3 : 3단계

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
- (1) 2단계에서 파악된 대상공정 및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기 파악된 기존의 리스크관리활동을 고려하여 그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발생빈도 (발생 가능성)와 발생 시 피해강도(피해 심각성)를 단계별로 위험수준을 결정
- (2)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계산은 발생빈도와 피해강도의 곱으로 리스크 (위험의 크기) 수준 결정



- (3) 리스크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, 피해강도의 수준을 4단계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장 특성에 따라 빈도 및 강도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음
- (가) 발생빈도(예시)는 <표 1> 과 같으며, 과거의 재해 또는 앗차사고 등 발생내용 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의 빈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<표 1> 발생빈도(발생 가능성)

| 단계 | 빈도수준 | 내 용 |
|----|------|--|
| 5 | 빈번함 | 3년간 중대재해 1건 이상 발생 또는 3년간 재해 3건 이상 발생 또는 앗차사고 8건 이상 발생 |
| 4 | 높음 | 3년간 재해 2건 발생 또는 년간 앗차사고 7건 발생 |
| 3 | 있음 | 3년간 재해 1건 발생 또는 년간 앗차사고 5~6건 발생 |
| 2 | 낮음 | 년간 앗차사고 3~4건 발생 |
| 1 | 거의없음 | 년간 앗차사고 1~2건 발생 |

> (나) 피해강도(예시)는 <표 2>와 같으며, 과거의 재해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강도 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<표 2> 피해강도(피해 심각성)

| 단계 | 강도수준 | 재해로 인한 손실일수 | 소음 |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정도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4 | 매우심각 | 손실일수 310일 이상 | 90 dB(A) 이상 | 천식, 암, 유전자 손상 |
| 3 | 심각 | 손실일수 100일~309일 | 85~89 dB(A) | 피부감작, 화학적 질식작용, 생식독성 |
| 2 | 보통 | 손실일수 99일 이하 | 80~84 dB(A) | 단일노출로 비가역적 건강영향, 강한 부식성, 단일노출로 강한 자극증상(가역적) |
| 1 | 영향없음 | 손실일수 없음 | 80 dB(A) 미만 | 피부, 눈의 경미한 점막 자극 |

- ※ 재해발생건당 평균손실일수가 310일이므로 310일 이상을 노동력 상실 등 치명적인 재해로 간주하여 위험강도 "4"로 설정
- (다) 현재 리스크 계산방법
- 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계산은 빈도의 단계와 강도의 단계를 조합하여 위험크기 수준결정
- ② 최종적인 리스크 결정시 기존 리스크관리활동을 고려하여 빈도와 강도의 수준을 정함
- (라) 리스크 결정(빈도×강도, 예시)은 <표 3>과 같다.

<표 3> 리스크 결정

| | 강도 | 영향없음 | 보통 | 심각 | 매우심각 |
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--|
| 빈도 | 단계 단계 | 1 | 2 | 3 | 4 |
| 거의없음 | 1 | 1 | 2 | 3 | 4 |
| 낮음 | 2 | 2 | 4 | 6 | 8 |
| 있음 | 3 | 3 | 6 | 9 | 12 |
| 높음 | 4 | 4 | 8 | 12 | 16 |
| 빈번함 | 5 | 5 | 10 | 15 | 20 |

5.2.4 : 4단계

현재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

- (1) 리스크 평가는 3단계에서 행한 유해위험요인별 리스크 계산값(수준)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인지,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
- (2) 이 판단을 위하여 평가된 리스크 계산값에 따라 리스크 수준에 따른 관리기준을 정하되, 사업장 특성에 따라 관리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
- (3) 리스크 평가(예시)는 <표 4>와 같다.

<표 4> 리스크 평가

| 리스 | 스크 수준 | 관리 기준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|
| 1~3 | 무시할 수 있는 위험 |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| |
| 4~6 | 미미한 위험 |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| 위험작업을 허용함 (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) |
| 8 | 경미한 위험 | 위험의 표지부착,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| |
| 9~12 | 상당한 위험 | 계획된 정비·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| 조건부 위험작업 허용 |
| 15 | 중대한 위험 |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· 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| (작업을 계속하되, 위험감소활동을 실시 하여야 함) |
| 16~20 | 매우 중대한 위험 |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| 위험작업 즉시개선 (즉시 작업을 개선 하여야 함) |

(4)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발생빈도와 피해강도의 수준을 조합한 리스크(위험크기) 수준을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 평가표에 기입

5.2.5 : 5단계

추가 리스크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.

- (1)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서 작성(별지 3 참조)
- (가) 유해위험요인별 리스크관리계획
- (나) 리스크관리계획 실시 일정
- (다) 실행여부에 대한 확인
- (2) 리스크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 경우 추가 리스크관리계획 수립
- (3) 유해위험요인별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은 기존 리스크관리활동을 고려하여 수립하되, 다음의 원칙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.
- (가)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.
- (나) 위험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.
- (다) 위험을 방호하거나 격리시킬 수 있는지 검토한다.
- (라)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.
- (4) 유해위험요인별로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을 시행할 경우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개선 후 리스크 계산을 3단계의 순서에 따라 실시
 - ※ 추가 리스크관리계획 실행 후 리스크는 가능한 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위험수준이 되어야 함

6.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의 시행 및 사후관리

- 6.1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.
 - (1)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서의 개선일정은 리스크 수준, 정비 일정 및 소요경비를 파악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 시행

- (2) 개선대책은 "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리스크를 낮게(ALARP: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)"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함
- 6.2 이행결과 확인 및 사후관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.
 - (1) 리스크관리계획 내용의 개선여부 확인
 - (2) 리스크관리계획 후 잔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등을 게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
 - (3) 미개선 사항 등 실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, 애로사항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 실시
 - (4) 리스크 평가 기법 교육
 - (5)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한 안전보건교육 실시

<별표1>

4M의 항목별 유해위험요인(예시)

| 항 목 | 유해위험요인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Man (인적) | 근로자 특성(장애자, 여성, 고령자, 외국인, 비정규직, 미숙련자 등)에 의한 불안전 행동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, 작업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등 휴먼에러(Human error) 개인 보호구 미착용 |
| Machine (기계적) | 기계・설비 구조상의 결함 위험 방호장치의 불량 위험기계의 본질안전 설계의 부족 비상시 또는 비정상 작업시 안전연동장치 및 경고장치의 결함 사용 유틸리티(전기, 압축공기 및 물)의 결함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|
| Media (물질・환경적) | 작업공간(작업장 상태 및 구조)의 불량 가스, 증기, 분진, 흄 및 미스트 발생 산소결핍, 병원체, 방사선, 유해광선, 고온, 저온, 초음파, 소음, 진동, 이상기압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 등 |
| Management (관리적) | 관리조직의 결함 규정, 매뉴얼의 미작성 안전관리계획의 미흡 교육·훈련의 부족 부하에 대한 감독·지도의 결여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미게시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미흡 고혈압 예방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|

<별지1> 리스크 평가표 1

| <u>부서(팀),공정명</u> | | | | OL저 H 기사 | 이 싫 | 저ㅂ | | 생산품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|--|
| 원(재)료 | | | 1 | <u>안전보건상</u> | 刊台 | <u>8 I</u> | | 근로자수 | 명 |
| 공정(작업)순 | 서 | 기계·기구 및 기계·기구 및 설비명 | | 유해 회 화 학물질 명 | ·학물질 취급량/일 | 취급시간 | | 기타 위 | 안전보건상 정보 |
| | | / /미·/기 | | O - P | 万日 0 0 三 | TI II | - | 로자 □ <u>근로자 □</u> 작업 유무 (유 수단 (기계□ 작업허가증 유 물 인력취급/ □, 밀기 □ 환경측정 측정 exma 측정치 | 경력특성 1년미만 미숙련자 □ 비정규직 근로자 □ 장애근로자 □ 장애근로자 □ |

<별지2> 리스크 평가표 2

리 스 크 평 가 표 (4M-Risk Assessment)

| _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|---|----|-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| 평가다 | · 상공정 | 작업발생주기 | | | | | | 작업시간(1회) - | 평가일 | 시 평가자 | 평균 리스크 | | |
| | 부서(팀)명 | 공정명 | 일 | 주 | 월 | 분기 | 반기 | 년 | 역납시신(1최) | 평가일시 | 평가자 | 현재 | 리스크관리후 | |
| ſ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| 평가 | | 피해 | 재 해 | 기존 | 현지 | 내 리스 | 크 | - 추가 | | :크관 리스: | :리후 크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작업내용 | 구분 (4M) | 유해위험요인 | 대상 | 형태 | 리스크관리활동 | 빈 도 | 강 도 | 리스크 | 리스크관리계획 | 빈 도 | 강 도 | 리스크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
<별지3> 리스크 평가표 3

| 부서(팀), 공정명 | | 중기 기소 그 제 기계 최 | LI | I . | 일행 보서 | 담딩 | - | 팀장 | 공장장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
| 작성일시 | | 추가 리스크관리계획 | - 1 | 학인 ^부 서 | 담딩 | | | 팀장 | |
| 평가대싱 | ·사작업 | 리 스 크 관 리 계 획 | 르 <i>스</i> 일정 | : 크관리가 담당 | | 실행 치결과 | 확인일 | <u>.</u> 자 | 비고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
<별지4> 작성예시

| 부서(팀), 공정명 | 생산 | 트, 생산2팀 | _ | 안 전 보 건 상 | | | _ | 생산품 | 자동차 도어 개폐장치용 브라켓트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|---|
| 원(재)료 | | 철딴 | (X | ト동차 부분 | 남품 제 | 조업 |) [| 근로자수 | 50 명 |
| 공정(작업)순 | : 서 | 기계·기구 및 기계·기구 및 설비명 | | 유해호 화학물질명 | ▶학물질 취급량/일 | 취급시간 | | 기타 9 | 안전보건상 정보 |
| 원재료 입고 | 원재료 입고 지게 ³ ↓ | | | - | _ | - | ○ 3년간 : - 산재 : | ⊦례 손가락절단:/, 프례스손가락절단:2) | |
| 전단 ↓ | | 전단기 | 5 | - | - | - | ○ 앗차사: - 앗차 헙:/) | | (지게차충동위혔:/, 밀링말빑위 |
| 프레스 성형 | 単레스 성형 프레스 | | | - | _ | _ | ○ 근로자 | 구성 및 | 경력특성 |
| ↓ (부대공정) 금형가공 | ↓ (부대공정) 밀링 | | | - | _ | _ | 여성근로7 고령근로7 외국인 근 | 자 | 1년미만 미숙련자 ■ 비정규직 근로자 ■ 장애근로자 □ |
| | | 평면연삭기 휴대형연삭기 | 3 | | | | ○ 운반수! ○ 안전작' ○ 중량물 (들기 ■ ○ 작업환: : n-He. | 단 (기계 ■ 업허가증 등 인력취급/ ■, 밀기 □ 경측정 측정 xane 측정 ⁾ | 유■, 무□): 2교대 , 인력□): 시계차, 이동대차 필요작업 유무(유□, 무■) 시 단위중량(12kg) 및 취급형태], 끌기 □) 성유무(측정■, 미측정□, 해당무□) 시 : 4ppm(노축기준 : 50ppm) 안전교육 필요유무 (유■, 무□) |

리 스 크 평 가 표 (4M-Risk Assessment)

| 평가대 | 개상공정 | | | 작입 | 발생주 | 7 | | 작업시간(1회) | 평가일 | 시 평가자 | 평균 | 리스크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----|--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|
| 부서(팀)명 | 공정명 | 일 | 주 | 월 | 분기 | 반기 | 년 | 역합시간(1회) | 평가일시 | 평가자 | 현재 | 리스크관리후 | |
| 생산1팀 | 원재료 입고 및 출하 | 0 | | | | | | 8시간 | 2010. 12. 1 | 이안전, 김반장 홍길동, 박주의 | 9.0 | 5.0 | |

| | 평가 | | 피해 | 재 해 | 기존 _ | 현지 | 내 리스 | 크 | 추가 | | 리스크관리후 리스크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작업내용 | 구분 (4M) | 유해위험요인 | 대상 | 형태 | 리스크관리활동 | | 강 도 | 리스크 | 리스크관리계획 | | 강 도 | 리스크 | |
| | 인적 (Man) | ○무자격자 운전 ○지게차 포크상부에서 고소 작업 실시 ○화물과다 및 편하중 적재 | 김기사 이상식 최안전 | 충돌 추락 협착 | 없음 없음 없음 | 5 3 5 | 4 4 | 20 12 20 | ○지게차 유자격자만 운전 ○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운반구 제작 사용 ○화물과다 및 편하중 적재금지 | 2 1 2 | 4 4 | 8 4 8 | |
|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재료 | 기계적 (Machain) | ○전조등 및 후미등 상태 ○지게차 경보등 및 경보음 ○급선회시 핸들 Knob 사용 ○안전벨트 부착 | 주변작업자 " 김기사 " | 충돌 충돌 협착 협착 | 후미등만 설치 설치사용상태 양호 부착사용 없음 | 4 2 4 4 | 3 2 3 4 | 12 4 12 16 | ○2.5톤 지게차(1대) 전조등 교체 - ○핸들 Knob 제거 ○지게차(2대) 안전벨트 부착 | 2 2 2 2 | 3 2 3 4 | 6 4 6 8 | |
| (철판) 운반작업 | 물적 · 환경적 (Media) | ○작업장 바닥상태 ○작업장 조명상태 ○지게차 전용통로 | 주변작업자 " | 전도 충돌 충돌 | 상태 양호 상태 양호 전용통로 확보 | 2 2 2 | 2 2 2 | 4 4 4 | - | 2 2 2 | 2 2 2 | 4 4 4 | |
| | 관리적 (Management) | ○지게차 관리전담자 지정 ○지게차 운행구간별 제한속도 표지판 ○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| - | 충돌 | 지정됨 표지판 부착완료 게시됨 | 1 2 2 | 2 2 2 | 2 4 4 | - | 1 2 2 | 2 2 2 | 2 4 4 | |

리 스 크 평 가 표 (4M-Risk Assessment)

| 평가다 | 배상공정 | | | 작업 | 발생주기 | ין | | 작업시간(1회) | 평가일 | 시 평가자 | 평균 | 리스크 |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|----|------|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|
| 부서(팀)명 | 공정명 | 일 | 주 | 월 | 분기 | 반기 | 년 | 역합시간(1회) | 평가일시 | 평가자 | 현재 | 리스크관리후 | |
| 생산1팀 | 절단 | 0 | | | | | | 8시간 | 2010. 12. 1 | 이안전, 박반장 홍길동, 팀장 | 8.9 | 4.6 | |

| | 평가 | | I | 재 해 | 기존 | 현지 | 니 리 <i>스</i> | ≥크 | 추가 | | :크관 리스=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업내용 | 구분 (4M) | 유해위험요인 | 대상 형태 | | 태 리스크관리활동 . | | 강 도 | 리스크 | 리스크관리계획 | 빈도 | 강 도 | 리스크 |
| | 인적 (Man) | ㅇ중량물 취급방법 - 근골격계 부담작업 "4"호 | 박상식 전단작업자 | 근 <u>골</u> 질환 | 부적절 | 4 | 3 | 12 | o철판 적재대 위치 이동 또는 전단기 방향 변경(90도)하거나 자동이송장 치 설치 | 2 | 3 | 6 |
| 전단기를 이용한 철판 | 기계적 (Machain) | ○전단기 안전장치 (광전자식, 손접촉예방, 방호울) ○동력전달부 방호덮개 ○전단기 풋스위치 덮개 ○구동모터 접지 ○기동스위치 등 충전부 방호조치 | 박상식 전단작업자 | 협착 협착 | 방호울 설치간격부적절 없음 없음 미실시 양호 | 5 3 3 3 2 | 3 3 4 2 | 15 9 9 12 4 | ○전단기(1호기) 손접촉예방 방호울 간격 조정(8mm이하) ○전단기(3호기)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설치 ○전단기(5대) 풋스위치 덮개 설치 ○전단기(2호기) 모터 접지 | 2 2 2 2 2 | 3 3 4 2 | 6 6 6 8 4 |
| | 물적 · 환경적 (Media) | ○절단작업시 소음 ○작업장 바닥상태 ○완번구(이동대자) 운행통로 확 보 ○작업장 정리정돈 | 박상식 전단작업자 | 소음 전도 충돌 전도 | 발생[측정치:92dB(A)] 양호 미확보됨 미흡 | 3 2 4 3 | 3 2 3 3 | 9 4 12 9 | ○해당작업 근로자 귀마개 (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필)착용 ○이동대차 통로 확보(정리정돈) ○철스크랩 청소 등 작업장 정리정돈 | 2 2 1 1 | 3 2 3 3 | 6 4 3 3 |
| | 관리적 (Management) | ○안전보건표지 부착 ○작업표준 및 안전수칙게시 ○안전보건교육 | 박상식 전단작업자 | 협착 | 미부착 게시 미실시 | 3 1 3 | 3 3 3 | 9 3 9 | ○귀마개 착용 표지판 부착 ○정기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| 1 1 1 | 3 3 3 | 3 3 3 |

리 스 크 평 가 표 (4M-Risk Assessment)

| 평가다 | 내상공 정 | | | 작입 | 발생주기 | 7 | | 작업시간(1회) | 평가일 | 시 평가자 | 평균 | 리스크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|----|------|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
| 부서(팀)명 | 공정명 | 일 | 주 | 월 | 분기 | 반기 | 년 | 학합시간(1회) | 평가일시 | 평가자 | 현재 | 리스크관리후 |
| 생산1팀 | 프레스 성형 | 0 | | | | | | 8시간 | 2010. 12 1 | 이안전, 조반장 홍길동, 팀장 | 8.9 | 5.3 |

| | 평가 | | 피 해 | 재 해 | 기존 | 현자 | l 리스 | -크 | 추가 | | :크관 리스 =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작업내용 | 구분 (4M) | 유해위험요인 | 대상 | 형태 | 리스크관리활동 | | 강도 | 리시며 | 리스크관리계획 | 피서 | 강도 | 리시크 |
| | 인적 (Man) | ㅇ중량물 취급방법(근골격계질) 환 - 근골격계 부담작업 "8"호 | 김레스 프레스 작업자 | 근 <u>골</u> 질환 | 양호 | 2 | 2 | 4 | 없음 | 2 | 2 | 4 |
| | | o 프레스 안전장치 (광전자식, 양수조작식, 수인식, 손쳐내 기식) | | 협착 | 미설치 | 3 | 5 | 15 | ○마찰클러치형 프레스(150톤:1대)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○핀클러치형 프레스(5대) 플라이휘 | 1 | 5 | 5 |
| 프레스를 이용한 | 기계적 (Machain) | ㅇ플라이휘일 방호덮개 | 김레스 프레스 | | 미설치 | 3 | 3 | 9 | 일 방호덮개 설치 ㅇ핀클러치형 프레스 마그네틱 수공구 | 2 | 3 | 6 |
| 펀칭 및 벤딩 작업후 | | ○원재료 공급방법 적정성 ○기동스위치 등 충전부 방호조치 | 작업자 | | 부적절 미설치 | 3 | 3 | 15 | 사용 및 마찰클러치형 프레스 지그 설치 ㅇ핀클러치형 프레스(5대) 기동스위 치 교체 | | 5 3 | 5 |
| 반제품 이동 | 물적 · 환경적 (Media) | ○성형작업시 소음 ○운반기구(이동대차) 운행 통로 확보 ○작업장 정리정돈 | 김레스 프레스 작업자 | 소음 충돌 전도 | 발생[측정치:105dB(A)] 양호 미흡 | 3 2 3 | 3 2 3 | 9 4 9 | o해당 작업근로자 귀마개(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 검정필)착용 o프레스 금형적재대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안전통로 확보 | 2 2 2 | 3 2 3 | 6 6 6 |
| | 관리적 (Management) | ○안전보건표지 부착 ○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 시 ○안전보건교육 | 김프레스 프레스 작업자 | 협착 | 미부착 게시 미실시 | 3 1 3 | 3 3 3 | 9 3 9 | ○귀마개 착용 표지판 부착 ○정기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| 2 1 2 | 3 3 3 | 6 3 6 |

리 스 크 평 가 표 (4M-Risk Assessment)

| 평가다 | 배상공정 | | | 작입 | 발생주기 | 7 | | 작업시간(1회) | 평가일 | 시 평가자 | 평균 | 리스크 |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|----|------|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|
| 부서(팀)명 | 공정명 | 일 | 주 | 월 | 분기 | 반기 | 년 | 역합시간(1회) | 평가일시 | 평가자 | 현재 | 리스크관리후 | |
| 생산2팀 | 금형기공 | 0 | | | | | | 6시간 | 2010. 12. 1 | 이안전, 신반장 팀장 | 7.2 | 5.0 | |

| | 평가 | | 피 해 | 재 해 | 기존 | 현재 리스크 기존 추가 | | | | | :크관 리스=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작업내용 | 구분 (4M) | 유해위험요인 | 대상 | 형태 | 리스크관리활동 | 빈도 | 강도 | 리스크 | 리스크관리계획 | 빈머 | 강도 | 리시크 |
| | 인적 (Man) | ○공작기계 사용작업시 면장갑 착용 ○금형 래핑 작업시 작업대 | 최밀링 김기계 | 근골 | 착용 미설치 | 3 | 4 3 | 12 9 | ○면장갑 착용금지(가죽장갑 대체) ○작업대 설치 | 1 2 | 3 | 4 6 |
| 밀링 등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| 기계적 (Machain) | ○ 공작기계 시용작업시 칩 비산 ○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○분전반 충전부 방호조치 ○운반기계의 안전조치 | 최밀링 김기계 | 협착 감전 | 미조치 설치 미실시 미흡 | 3 2 2 3 | 4 2 2 3 | 12 4 4 9 | ○칩비산 방지장치 설치 또는 보안경 착용 ○이동식 호이스트 비퀴구름방지장치 부착 | 2 2 2 2 | 4 2 2 3 | 8 4 4 6 |
| 금형가공 ¹ 작업 | 물적 · 환경적 (Media) | ○연삭작업시 분진 ○작업장 바닥상태 ○작업장 정리정돈 | ű | 전도 | 미조치 양호 미흡 | 3 2 3 | 3 2 3 | 9 4 9 | ○평면연삭기(2대) 국소배기 설비 설 치 ○금형등 정리정돈(통로확보) | 2 2 2 | 3 2 3 | 6 4 6 |
| | 관리적 (Management) | ○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게시 ○안전보건교육 | u | 충돌 햡착 | 게시 양호 | 2 2 | 2 2 | 4 4 | 없음 없음 | 2 | 2 2 | 4 4 |

| 부서(팀), | 생산1팀, | | | 실행 | 담당 | 팀경 | 장 공장장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공정명 | 원재료 입고 및 출하 |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서 | | 부서 | | | |
| 작성일시 | 2010. 12. 10 | T/1 4-464/14/14 | | 확인 | 담당 | | 팀장 |
| 70211 | 2010. 12. 10 | | | 부서 | | | |
| ョ 평가대 | 사자어 | 리 스 크 관 리 계 획 | 리스크 | 관리계획 | 실행 | 확인일자 참인일자 | 비고 |
| 공기대 | 0 H H | 니으크린니계곡 | 일정 | 담당 | 조치결과 | 릭진될자 | n 1 17 |
| 원재료 입 <u>.</u> | 고 및 출하 | o 지게차 운전자는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일정자격을 가진 작업자만이 운전토록 조치 | 12. 15 | 작업반장 | 조치 | | 작업전 |
| | - X - 1 | ㅇ지게차에 화물적재시 과다 적재 및 편하중 적재를 금지하는 등 화물적재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 실시 | 12. 10 | 66 | 44 | | 안전교육 실시 |
| | | o 지게차(2대)에 안전벨트를 부착하여 지게차 전도시 운전자가 뛰어 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토록 조치(배터리형 지게차는 안전벨트 연동장치 부착 금지) | 12. 30 | 정비반장 | 지게차 정기점검일 조치예정 | | |
| | | ○전조등이 파손 된채 방치되어 있는 지게차(2.5톤:1대)의 전조등을 교체하고, 지게차 운행시 전조 및 후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운 행 실시 | 12. 15 | 정비반장 | | | |
| | | 핸들에 부착되어 있는 Knob(급선회시 사용)를 제거하여 지게차 급선회에 의한 전복 등의 재해예방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전용 고소작업차 등을 사용하고, 부득이하게 지게차 활용시 표준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 운반구제작 사용 | | 작업반장 공무반장 | 조치 조치예정 | | 외주제작 예정 |

| 부서(팀), | 생산1팀, | | | 실행 | 담당 | · 팀경 | 당 공장장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공정명 | 절단 |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서 | | 부서 | | | |
| 작성일시 | 2010. 12. 10 | | | 확인 | 담당 | | 팀장 |
| | | | 71 | <u></u> 부서 | -1 41=11 | | |
| | 상작업 | ┃ ┃ | - | 관리계획 | · | 확인일자 | 비고 |
| | | | 일정 | 담당 | 조치결과 | | |
| 천 | 단 | ○전단기(1호기) 손접촉 방호울 설치시 방호울은 설치 높이가 조정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도록 하고, 방호울 하단과 송급소재 상면과의 간격은 항시 8mm 이내가 유지되도록 조치 | 12. 10 | 공무반장 | 조치 | | |
| | | ○ 이동대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통로에 방치되어 있는 반제품, 사용한 금형 등 정리정돈 실시 ○철판 적재대 위치를 전단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| 12. 10 | 작업반장 | | | |
| | | 근접시키거나 또는 전단기 설치방향을 90도 변경 - 장기적으로 철판 자동이송장치 설치 검토 | - | | 정기보수시 조치예정 | | |
| | | ○ 노출된 전단기(3호기) 벨트 구동부에 견고한 구조의 방호덮개 설치 ○ 노출된 전단기(5대) 풋페달 스위치 상단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, | 12. 10 | 공무반장 | 조치 | | |
| | | 중랑물 낙하에 의한 슬라이드 불시하강 위험이 배제되도록 조치 | 12. 10 | 작업반장 | 조치 | | |
| | | ○작업장 통로에 방치되어 있는 철스크랩 등 청소를 실시하여 작업장 정리정돈 실시 | 12. 10 | 작업반장 | 조치 | | |
| | | ○절단작업 근로자에게 차음보호구인 귀마개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필)를 지급·착용하여 소음성난청 예방 | 12. 10 | 작업반장 | 조치 | | |
| | | ㅇ절단공정 전면에 귀마개 착용 표지판(2개소)을 부착하여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| 12. 10 | 작업반장 | 조치 | | |
| | | ○절단공정의 위험성과 재해사례에 대한 정기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| 12. 10 | 작업반장 | 조치 | | |

| 부서(팀), | 생산1팀, 프레스 성형 | | | 실행 | 담당 | 팀 7 | 당 : | 공장장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
| 공정명 | |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서 | | 부서 확인 | 담당 | - | | 팀장 |
| 작성일시 | 2010. 12. 10 | | | 부서 | | | | |
| 평가대 | 사자어 | 리 스 크 관 리 계 획 | 리스크 | 관리계혹 | 일 실행 | 확인일자 | н | l 고 |
| 3기대 | 0 1 н | 니므크린니계릭 | 일정 | 담당 | 조치결과 | 릭근글자 | J | 1 -1 |
| 프레스 | : 성형 | ○마찰클러치형 프레스(150 :1대)에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신규 구입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능검정필 제품)하여 교체 설치 | 12. 10 | 공무반장 | 조치 | | | |
| | | ○핀클러치형 프레스에 원재료 공급시 수공구(마그네틱류)를 지급 사용하고, 마찰클러치형 프레스에는 원재료 송급취출 지그 설치 사용 | 12. 10 | 작업반장 | 조치 | | | |
| | | o 충전부가 출된 핀클러치형 프레스(5대) 기동스위치를 교체하여 감전재해 예방 | 12. 10 | 공무반장 | 조치 | | | |
| | | ○노출된 프레스(핀클러치형:5대) 플라이휘일 구동부에 견고한 구조의 방호 덮개 설치 | 12. 10 | 공무반장 | 조치 | | | |
| | | ㅇ작업장 통로 및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프레스 금형을 금형 적재대에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안전통로 확보 | 12. 10 | 작업반장 | 조치 | | | |
| | | ○성형작업 근로자에게 차음보호구인 귀마개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필)를 지급·착용하여 소음성난청 예방 | 12. 10 | 작업반장 | 조치 | | | |
| | | ○성형공정 전면에 귀마개착용 표지판(2개소)을 부착하여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| | 공무반장 자연비자 | | | | |
| | | ㅇ성형공정의 위험성과 재해사례에 대한 정기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| 12. 10 | 작업반장 | 조치 | | | |

| 부서(팀), | 생산2팀, | | | 실행 | 담당 | · 팀 | 장 | 공장장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|-----|
| 공정명 | 금형기공 |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서 | | 부서 | | _ | | 디지 |
| 작성일시 | 2010. 12. 10 | | | 확인 | 담당 | | | 팀장 |
| | | | - 기 시 그 | <u></u> 부서 | ᅵ | | | |
| 평가대 | 상작업 | 리스크관리계획 | | .관리계혹 | | 확인일자 | | 비고 |
| 0 1 1 | | 1———— | 일정 | 담당 | 조치결과 | , | | ' |
| 금형 | 가공 | o 선반, 밀링 등 공작기계 작업점 전면에 아크릴 등을 이용한 칩 비산 방지장치를 설치하든가 또는 해당 작업자에게 눈보호용 보안경 착용 | 12. 10 | 작업반장 | 조치 | | | |
| | | ○ 공작기계 사용작업시 면장갑의 착용을 금지하여 엔드밀 등 절삭 공구 말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, 장갑착용 필요시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 착용 | 12. 10 | 작업반장 | 조치 | | | |
| | | o 금형 래핑 작업용 작업대를 설치하여 래핑작업시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실시하던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| 12. 10 | 공무반장 | 조치 | | | |
| | | ○이동식 호이스트(2.8톤:1대) 바퀴에 구름방지용 스톱퍼를 설치하 여 불시 구름에 의한 발협착 위험 제거 | 12. 10 | 공무반장 | 조치 | | | |
| | | ○평면연삭작업시 작업장내로 확산되는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국 소배기설비(2대) 설치 | - | 공무반장 | 정기보수 | | | |
| | | ○작업장 통로 및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금형, 공구를 전용 적치대에 정리·정돈을 실시하여 안전통로 확보 | 12. 20 | 공무반장 | 작업시 조치 | | | |